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0의2] <개정 2023. 9.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제3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0조의6제1항 본문 관련)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아목은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에서 제외한다.
  - 가.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
  - 나. 가스운반선
  - 다. 유조선등
  - 라. 컨테이너선
  - 마. 일반화물선[가축운반선(livestock carrier), 부선(barge carrier), 중구조물 운반선(heavy load carrier), 요트운반선(yacht carrier), 핵연료운반선(nuclear carrier)은 제외한다]
  - 바. 냉동화물운반선
  - 사. 겸용선
  - 아. 여객선
  - 자.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
  - 차.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유닛(roll-on-roll-off cargo transportation units)운반선]
  - 카. 로로여객선
  - 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 파. 크루즈여객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중에서 비전통추진방식을 가진 선박과 선박의 종류와 관계없이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관한 국제규정(Polar Code)에서 정한 범주A 선박(다년생 얼음을 포함하여 최소한 중간 정도 두께의 일년생 얼음이 있는 극지해역의 운항을 위해 설계된 선박을 말한다)은 제1호에 따른 계산 대상선박에서 각각 제외한다.

※ 비교

이 별표(별표 20의3, 별표 20의5 및 별표 20의6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12장제1규칙에 따른 선박으로서 광석운반선을 포함하여 주로 산적상태의 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겸용선은 제외한다.
2. "가스운반선"이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외에 액화가스를 산적상태로 운송하는 데 사용하도록 건조되거나 개조된 화물선을 말한다.
3. "유조선등"이란 유조선, 국제협약 부속서 제2장제1규칙에 따른 위험화학품산적

운송선(chemical tanker)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NLS tanker)을 말한다.

4. "컨테이너선"이란 화물창과 갑판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도록 설계된 선박을 말한다.
5. "일반화물선"이란 다중갑판 또는 단일갑판 선체구조를 가진 선박으로서 주로 일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을 말한다.
6. "냉동화물운반선"이란 화물창 내에 냉장화물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선박을 말한다.
7. "여객선"이란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8.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이란 비어 있는 자동차 및 트럭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다중갑판 구조를 가진 선박을 말한다.
9.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유닛(roll-on-roll-off cargo transportation units)운반선]"이란 로로화물수송유닛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을 말한다.
10. "로로여객선"이란 로로화물구역을 가진 여객선을 말한다.
11.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이란 액화천연가스를 산적상태로 운송하는 데 사용하도록 건조되거나 개조된 화물선을 말한다.
12. "크루즈여객선"이란 화물갑판을 가지지 않는 여객선으로 여객의 숙박 및 운송을 위해 설계된 선박을 말한다.
13. "비전통추진방식"이란 왕복내연기관으로 작동되며 직접 또는 기어 박스를 통해 추진축에 결합하여 추진하는 전통추진방식 외에 디젤 및 전기 추진방식, 터빈 추진방식 및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을 말한다.